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3
----------	-----

2019. 3. 8. (금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9년 4월 9일

다. 회부일자: 2019년 4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2019년 4월 22일

(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남창현)

가. 제안이유

- 병설·부설·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장 위임사항 중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
- 직속기관장 위임사항 중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교육장에게 위임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임발령 사항 중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
- 병설(병설유치원 포함)·부설·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적기 임용 및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정
-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‘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·보직부여’에 대하여 6급(상당) 이하로 그 범위를 지정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충환)

-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,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병설(병설유치원 포함)·부설·통합 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적기 임용 및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.
- 입법예고 기간 중 겸임발령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지난 3월 시행된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,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외부 의견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‘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·보직부여’에 대한 위임 사항의 적용범위를 6급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수정가결”

7. 수정안 요지

○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. 4. 22 / 서동학 의원

○ 수정이유

조례의 개정안 중 병설·부설·통합 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 3월 시행한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의 취지와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

○ 수정내용

- 개정안 제5장, 제6조

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<u>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(병설·부설·통합학교 내 제외)</u> ·휴직·----- -----	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<u>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·휴직</u> ----- ----- -----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<u>소속 일반직 6급 이하 지방 공무원의 병설(병설유치원 포함)·부설·통합학교 내</u> <u>겸임</u></p>	<p>제6조(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<삭제></p>

8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원안)
-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수정안)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원안)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호 중 “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·휴직”을 “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
(병설·부설·통합학교 내 제외)·휴직”으로 한다.

제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소속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병설(병설유치원 포함)·부설·통합
학교 내 겸임

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소속 6급(상당)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·보직부여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수정안)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소속 6급(상당)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·보직부여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·보직부여(단,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직부여는 제외)</u></p> <p>3. ~ 8. (생략)</p>	<p>제7조(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소속 6급(상당)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·보직부여</u>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**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** [시행 2018.1.1.] [법률 제11212호, 2012.1.26 타법개정]

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

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□ **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** [시행 2017.6.14.] [대통령령 제27667호, 2016.12.13. 제정]

제6조(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)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학습활동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2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3. 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4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
5.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
6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항